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3일, 박성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2.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 7. 29.)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9.)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5. 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훈의원)

공유수면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수면으로서,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하는 경우와 같이 공유수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

현행법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어업피해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갈등이나 이해관계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이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와 같이 공유수면에 견고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의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더 큰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으로써, 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등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둔 것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 어업피해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갈등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특히 현행법 제11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와 같이 공유수면에 견고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의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의견수렴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두어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보다 제고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절차와 그 효과를 보면, 공고 및 열람 후,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현재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는 허가의 기준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반영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 의견수렴의 실효성이 보다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결정 등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여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었음

8. 기타 사항

없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의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반영 절차의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부칙 제1조 및 제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7항 중 “타당하다고”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 ⑥ (생략)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⑦ ----- ----- ----- ----- ----- ----- ----- ----- ----- ----- <u>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점용·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하여야</u> ----- ----- ----- -----	⑦ ----- ----- ----- ----- ----- ----- ----- ----- ----- ----- <u>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u> ----- ----- ----- -----

⑧ · ⑨ (생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 ⑧ · ⑨ (개정안과 같음)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 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들어야”를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 점용·사용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하여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제8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 가) ① ~ ⑥ (생 략)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허 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 · 사 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 · 생태계 · 수산자원 및 자연경 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u>들어야</u> 하며, 점용 · 사용의 방법 및 관 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 일 수 있다.	⑦ ----- ----- ----- ----- ----- ----- ----- ----- <u>-----들어야 한다.</u> <u>이 경우 그 의견이 공공의 이</u> <u>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 점</u> <u>용 · 사용허가 여부 결정에 반</u> <u>영하여야</u> ----- ----- -----.
⑧ · ⑨ (생 략)	⑧ · ⑨ (현행과 같음)